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08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이정헌·박홍배·황정아

이기헌 • 박민규 • 이훈기

김 현 • 민형배 • 허성무

한민수 회민희 · 김영환

이병진 • 정진욱 • 서영교

임미애 • 박희승 • 이워택

의원(18인)

제안이유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우수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 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 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에 필요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공계인력 조사 및 고용·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정부로 하여금 이공계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 9조의3 신설).
- 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안 제11조의2 신설).
- 라. 정부로 하여금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마.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해외 우수 이 공계인력의 유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공계인력의 양성과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공계인력 정보의 수집·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 및 고용·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이하 "이공계인력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를 포함한다) 등의 개인정보
- 2.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성과 정보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한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고용·직업 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 정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7조의 제목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공계인력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을 "이공계인력 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을 "이공계인력 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을 "이공계인력 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를 "이공계인력 조사의"로, "및 이공계인력 수지지표의 작성 등에"를 "등에"로 한다.

- 1.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 에 관한 실태조사
-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 조사
-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 4. 이공계 석·박사 재학·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

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3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연구중심대학의 연구개발비 계상·사용에 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수행하는 국 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목별 사용용도와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1.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와 참여 연구자의 직접비 중인건비
 - 2. 간접비

제15조의2·제17조의2·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이공계인력의 병역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 과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으로 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과학기술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과학기술인(이하 이 조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이라 한다) 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 2.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 3.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 4.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 ② 정부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 ③ 대학 및 연구기관은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의2(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에 대한 육성 및 보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략
 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과학기술"이라 한다)
 분야를 선정하고 연구인력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 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별 국내외 인력 수급동향 조사
- 2.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별 연구 · 수요기술 수준 분석
- 3.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별 연구인력 육성ㆍ지원 체계 구축
- 4.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별 기술훈련 및 재교육 지원
- 5.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별 연구장려금 지원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3(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연구장려금 제공
 -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세제 혜택의 제공
 - 3. 구인 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 제공
 - 4. 국내 연구·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 5.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 6.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공계인력의 양성과 활용 및 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따른다. (신 설> 제6조의2(이공계인력 정보의 집·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	현 행	개 정 안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 따른다. <신 설> 제6조의2(이공계인력 정보의 집·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	<u><신 설></u>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공계인력의 양성과 활용 및 지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 따른다. 《신 설》 제6조의2(이공계인력 정보의 집·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		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따른다. 제6조의2(이공계인력 정보의 집·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0 설> 제6조의2(이공계인력 정보의 집·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집·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		
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	<u> <신 설></u>	
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		집·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
인력 조사 및 고용・경력경		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
		인력 조사 및 고용·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이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이하
"이공계인력 정보"라 한다)		"이공계인력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수집 ·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수집 · 관리하여야
<u>한다.</u>		<u>한다.</u>
<u>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u>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		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
록번호를 포함한다) 등의		록번호를 포함한다) 등의 개
<u>인정보</u>		<u>인정보</u>
		 2.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연구
개발성과 정보		

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한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고용 ·직업 정보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공계인력 정보를 파악하 는데 필요한 정보

제7조<u>(이공계인력 조사)</u> ① <u>과학</u> <u>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u>다음 각 호의 조사</u> (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 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 내외 유입·유출 현황 조사
-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 4. 이공계 석・박사 재학・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

 태조사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 ②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 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 학 · 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 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 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 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의 경력 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들의 국 내외 유입·유출 현황을 지표 (이하 "이공계인력 수지지표"라 한다)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이공계인력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 이공계인력 조사를-----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공계인력 조사를
<u><삭 제></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u>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

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5) -----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및 이공계인 력 수지지표의 작성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신 설>

_	_		_	
				•

<u>⑥ 이공계인력 조사의------</u> -----<u>등에</u>-----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연구중심대학의 연구 개발비 계상·사용에 관한 특 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 신법」 제13조제4항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비목별 사 용용도와 계상기준을 별도로 <신 <u>설></u>

<신 설>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의 교수와 참여 연구자의 직

 접비 중 인건비

2. 간접비

제15조의2(이공계인력의 병역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인력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과학기 술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과학기술인(이하 이 조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이라 한 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 2.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 3.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일자
 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연구
 개발사업 지원
- ② 정부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의 경력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 ③ 대학 및 연구기관은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21조의2(국가전략과학기술 분 야 이공계인력에 대한 육성 및 보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 설>

"국가전략과학기술"이라 한다) 분야를 선정하고 연구인력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별 국 내외 인력 수급동향 조사
- 2.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별 연 구·수요기술 수준 분석
- 3.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별 연 구인력 육성·지원 체계 구축
- 4.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별 기술훈련 및 재교육 지원
- 5. 국가전략과학기술 분야별 연 구장려금 지원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3(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학기 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

<u><신 설></u>

- <u>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u>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연구장려금 제공
-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세제 혜택의 제공
- 3. 구인·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 제공
- 4. 국내 연구·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 5.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 6.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